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58
----------	------

제출년월일 : 2018. 4.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동일(안 제6조)

나.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안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07조, 제108조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2. 28. ~ 3.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2조에 따라”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 “제16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를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를 “영 제108조의 심사대상 외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7조로 한다.

제8조(현행의 제7조)제2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에 대하여 위원 중 영 제107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안전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구성·운영할”을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을 받거나”를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요청을 받거나”를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고, 시장은 제9조의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시장은”을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사결정시”를 “의사결정 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당을”을 “실비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32조에 따라 ----- ----- 제16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 -----.</p>
<p>제2조(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 -----.</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 ----- -----.</p>
<p>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삭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대구광역시 재무관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p>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08조의 심의대상 외에 ----- ----- 2.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 -. ---, 새로 위촉된 위원----- 남은 임기로 -----.</p>
<p>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의 불공정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p>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당해 안건을 심의하게 하거나 그 위원에게 자문하여서는 아니된다.</p> <p><신설></p> <p>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⑤ ~ ⑦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개의(開議)</u> ----- -----.</p> <p>③ 위원장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 중 영 제107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u>구성하여 심의하게 할</u> ----- -----.</p> <p>② ----- <u>5명 이상 10명</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을 받거나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②위원장은 심의 <u>요청을 받거나</u>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u>개최하여야</u>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u>통지하여야</u> 한다.</p>	<p>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u>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u> ----- -----.</p> <p>② ----- <u>또는</u> ----- ----- <u>열어야</u> -----.</p> <p>③ ----- <u>제2항에 따라</u> ----- ----- <u>통지하고, 시장은 제9조의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한다.</u>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u>의사결정시</u> 이를 참고한다.</p>	<p>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u>제10조제3항에 따라</u> ----- <u>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u> -- 없으면 ----- -----.</p> <p>② <u>제10조제3항에 따른</u> ----- ----- <u>의사결정시</u> -----.</p>
<p>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u> 2. <u>배수로 설치공사</u> 3. <u>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u> 4. <u>보안등 공사</u> 5. <u>보도블럭 설치공사</u> 6. <u>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u> 7. <u>마을회관 공사</u> 8. <u>공중화장실 공사</u> 9. <u>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u> 10. <u>공원공사</u> 11.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u> 	<p>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생략)</p> <p>② <u>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u>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수당</u>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1조에 따라</u> ----- ----- -----.</p> <p>③ ----- <u>실비를</u> -----.</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8.9.>

1.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전"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양병춘